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류 철 상(환경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I. 서론

-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하게 되었음
 - 1970년대 말부터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환경관련법의 토대인 환경보전법이 1977년에 제정되었고, 1980년에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처인 환경청이 설립되었음
 - 이후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의 환경 보전에 대한 기능(1994년 환경부 승격)과 역할이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자연환경보전중 생태계의 중요성과 인류와의 생명공동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적으로 1991년 자연환경보전법의 제정을 비롯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법 등의 제·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고, 국제적으로도 Ramsar 협약(1997년), 생물다양성협약 가입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Ⅱ. 자연생태계 보전현황

1. 자연환경 여건

- 한반도는 3면이 바다에 둘러 쌓여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생태계 여건을 갖추고 있음
- 국토면적은 99천km²이고 인구는 46백만명으로 km²당 인구밀도가 476명으로 매우 높으며(세계 3위),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지역으로

- 이용가능한 토지에 대한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연평균 강수량은 1,274mm로서 수자원의 총량은 126km³임.
 - 총 강수량의 3분의 2가 6월~9월까지의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홍수시 수자원총량의 37%가 활용되지 못하고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음.
 - ※ 기후 및 지리적 여건에 따라 수질오염에 취약한 하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갈수기에는 용수의 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 유지에도 큰 어려움이 있음.
 - 전국토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64천km²으로서 과거 60년대까지는 연료이용, 개간사업 추진 등으로 황폐화되었으나, 70년대부터 실시해온 산림녹화사업으로 비교적 양호한 산림형태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도로,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으로 훼손되어 매년 산림이 0.1%정도 감소되고 있음.
 - 국토의 3면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는 간척지와 대륙붕의 면적이 약 50만km²이고, 3,200여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나,
 - 농지, 산업단지 개발 등 간척사업으로 매년 74km² 정도의 갯벌이 감소되고 있음.

2. 생물종 관리 강화

- 환경부에서는 매년 육지, 습지, 해양 도서지역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현재까지 조사된 생물종은 총 29,828종으로서 동물이 18,029종, 식물이 8,271종, 미생물 등 기타 생물이 3,528종임
 - ※ 약 10만종 이상의 생물종이 서식되는 것으로 추정됨.
-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야생동식물 194종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음.

[보호대상 동·식물 현황]

구 분	지 정 종			지 정 목 적
	계	동물	식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43	37	6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는 지속적인 개체수 감소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을 보전
보호야생동·식물	151	99	52	

3. 자연보호지역 지정 관리

-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야생동식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지역, 습지보전지역, 특정도서지역, 조수보호구역, 천연보호림, 산림보전지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최근 동강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동강유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추진중임.

[자연환경 보호지역 지정현황]

보호구역 명칭	근 거 법	지 정 목 적	지 정 현 황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생태계보전	12개소, 102.04km ²
자연공원지역 (국립·도립·군립)	자연공원법 (환경부)	자연풍경지의 보존 및 이용	71개소, 7,529km ²
습지보전지역	습지보전법 (환경부)	습지보전	5개소, 44.29km ²
특정도서지역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생태계우수 무인도서 보전	48개소, 3.5km ²
조수보호구역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환경부)	야생조수보호	741개소, 1,398km ²
천연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으로 국민 문화생활 향상	303개소, 700.6km ²
산림보전지역	산 릫 법 (산림청)	산림의 보존과 이용	49,013km ² (총 산림면적의 75%)

Ⅲ. 자연생태계 보전 정책의 문제점

○ 자연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중요 자연생태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자연환경 훼손 증가

※ 백두대간 생태축에 양수발전소 및 도로 건설 등 개발사업 지속

-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 밀거래 성행으로 동식물의 종 및 개체수 감소로 인한 생물종 다양성 저하

※ 밀렵밀거래 적발실적

- 192건(1997년) → 834건(2000년) → 1,401건(2001년)

-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증가

○ 환경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 심화

- 인구 증가 및 팽창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으로 양적 개발이 확대 되어 환경질의 악화 초래

- 산업기반의 구축, 교통망의 형성, 수자원 개발, 공업단지, 도로·택지 등의 개발로 인하여 산림의 개간, 하천과 바다의 매립·간척 등 자연생태계의 지속적 훼손 행위 증가

⇒ 자연생태계 보전 및 개발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간의 갈등 상존

○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자원·조직 등의 기반 취약

-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가 문화재관리청과 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관련 부처간의 업무협조 미흡

※ 관련부처별 유사업무 현황

- 환 경 부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관리, 야생조수 보호, 자연공원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 해양수산부 : 연안습지(갯벌) 보전, 수산생물 보호
- 건설교통부 : 도시공원 지정·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 산 립 청 : 천연보호림 및 보안림 지정
- 문화재관리청 :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IV.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 자연보전의 기본목표는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통하여 자연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인간과 자연의 공생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음.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자연환경 보전 기본목표]

-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 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보호되고, 생물다양성·생태계 및 수려한 자연경관 등은 보전되어야 한다.
-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 국토를 통합하는 자연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 강화
- 자연보전 정책추진체계 확립과 자연보전·복원 기술 육성
- 야생 동식물 보호정책 기반 구축
-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 유도

[자연환경보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시책]

가. 국토를 통합하는 자연생태 네트워크 구축

-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 정책은 주로 생태계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희귀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등 다소 정적이고 국지적인 업무에 치중
 - ⇒ 국토 전반을 통합하는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에 한계 노출
- 앞으로는 산, 하천, 바다를 3대 핵심 생태축으로 하고, 도시와 농촌의 자연생태계를 보전 및 복원하여 3대 핵심 생태축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국토의 통합적인 자연생태 네트워크 구축
- 이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 한반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을 국토의 중심 생태축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권역별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백두대간과 연결된 산림의 보전과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 생태축 구현
 - 주요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하천 생태계 회복

- 바다·연안·도서의 우수한 생태계인 갯벌(약 2,393km²), 사구(133개소), 석호(9개소), 도서(3,153개소)에 대한 정밀 생태조사 실시 및 보전대책(보호지역 지정 관리 등) 강구
- 도시개발로 단절된 지역의 공원 녹지축을 확대하고, 소규모 생태계를 조성하여 주변의 자연 생태축과 연결
- 농촌 지역의 철새 도래지, 습지 등을 보전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생태마을로 조성
- 자연생태 네트워크 구축 수단으로
 - 자연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립공원, 습지보호 지역 등 각종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사업 확대 실시
 - 생태 구성요소간의 연결 통로를 조성하여 생태계 단절 방지
 - 지역주민이 동참한 자연보전운동과 생태적으로 건전한 교육·이용의 장이 되도록 유도

나. 접경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전정책

-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및 이와 인접한 지역은 과거에는 인간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나 지난 반세기 동안 인위적 개발이 통제되어 세계적으로 귀중하고 중요한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음.
- 이 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조사는 아직 전체적으로 실시된 바는 없으나,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2,800여종의 동식물과 146종의 희귀 동식물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수년간 인간의 간섭이 배제됨으로써 과거 농경지가 습지로 천이되는 등 생태계복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남북간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발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서 그 동안 복원되어온 우수한 자연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접경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동서지역을 잇는 핵심 생태축으로 구축

다. 자연생태계보전 정책추진체계 강화

- 자연환경보전법 등 각종 자연보전관련 법령을 체계화하고, 자연생태계보전 및 관리기능을 강화
- 전국의 자연생태 조사를 연차별로 실시하여 전 국토를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습지·무인도서 등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지역 지정 등 보전대책을 수립·추진

[전국 자연생태 조사현황]

구 분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완료 (2001.5)	완료율
자연환경 기초조사	1972~2002	육지 : 206권역 해안 : 145권역	육지 : 154 해안 : 118	육지 : 75% 해안 : 81%
전국 내륙습지조사	2000~2004	340	96	28%
무인도서 조사	1998~2002	641	496	77%

- 자연생태 조사결과를 자연환경종합 GIS-DB로 구축하고, 인터넷 Web 서비스를 실시하여 전 국민이 활용토록 추진
- 정부에서 기술 개발비를 지원하여 자연생태 보전 및 복원기술 개발을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로 육성하고, 전문업종과 전문가의 양성 추진

라. 야생 동식물 보호정책 기반 구축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등 관련 법 제도 정비
 - 현재 조류와 포유류 중심에서 어류, 파충류, 곤충, 식물 등을 포함한 관리범위 확대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와 서식지 보호대책 마련
 - 야생동식물 보호기금 설치,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체계 구축 등 추진
- 생물 자원에 대한 보전과 관리 강화
 -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s)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 수렵제도를 개선하고 밀렵근절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

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 생물다양성 협약, CITES, 람사협약 등의 가입으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에 적극 참여
 - 1997년 생물다양성 국가전략 수립
 - 1999년 IUCN 한국위원회가 설립
- ⇒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이 최근 매우 활발하게 진행중임
- 한·중·일 환경협력회의(1999년)를 통한 생태계 보전사업과 동북아 및 아·태 지역의 철새보호 협력사업, 황사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막화방지사업에도 적극 참여
- ※ 한·중 환경협력은 1993년부터 추진

바.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 유도

-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EIA)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 (ESSD 이념 실현)

V. 결론

- 그동안 높은 인구밀도와 성장 위주의 개발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생물종이 멸종되는 등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어 왔음.
- 그러나, 1990년대부터 국민의 자연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의식이 향상되어 자연보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끝없는 욕구충족과 물질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개발행위, 특히 지자체 도입 이후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개발사업은 전 국토의 훼손과 오염을 가중시켜 마침내는 인간의 쾌적한 삶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음.
- 따라서 앞으로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지향하면서 인간을 위한 자연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로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갖는 자연이 되도록 그 보전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붙임 1]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 현황

I. 일반현황

1. 동강유역 현황

- 유역면적 : 2,267km²(산림면적이 유역면적의 약 80%)
- 하천연장 : 51km(정선읍 가수리 ~ 영월읍 하송리), 상류는 조양강
- 주거인구 : 914가구, 2,505명으로 댐 백지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음

2. 수질 현황

- '01. 4월 이후 II 급수(BOD 1.4mg/L) 수질로 악화
- '01. 9월 이후 I 급수(BOD 1.0mg/L 이하) 수질로 개선됨

3. 관광객 및 래프팅 현황

- '00. 6~8월간 225천명으로 성수기에 집중 방문, 환경훼손 가중
- 래프팅 업소 : '99: 31업소 428대 → '01: 75업소 818대
- ※ 민박업소 : 총 81개소, 객실수 450(영월 49, 평창 12, 정선 20업소)

4. 자연환경 현황

- 동물 총 1,838종 : 천연기념물 13, 멸종위기 및 보호종 23종
- 식물 총 952종 : 희귀종 188, 멸종위기종 4 및 보호종 30종
-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 등 석회암동굴 77개, 모래톱 50여개, 단애 분포

II. 그간 동강 환경보전대책 추진 주요내용

1. “자연휴식지” 지정 추진(강원도)

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지정('01.12.22)

- 면적 : 정선·영월·평창군 17리 1,878필지 71km²
- 구간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광하교~영월군 영월읍 삼옥교(52km)

나.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공포('02. 3.16)

- 래프팅 : 입장객 제한(7,000명/1일), 구간제한(4개구간) 등
- 행위제한 : 취사·야영제한, 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 이용료 징수 : 1일 5000원 이내
- ※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02.3.16 ~4.8)

2.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환경부)

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안) 확정('02. 3.14)

- 대상면적 : 109km²(정선군 정선읍 광하교~영월군 영월읍 섭세 46km)
- 소유별 : 국·공유지 70%, 사유지 30%
- 지목별 : 임야 87%, 전/답 8%, 하천 4%, 기타 1%

III. 향후 추진일정

1.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4월)

- 공청회 준비기간을 고려, 4월초 현지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공청회 이후,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2.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실시(4~5월)

- 지방자치단체, 국·공유지 토지소유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3. 1단계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고시(6월)

-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의견을 수렴, 협의된 안을 바탕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고시

4. 사유지 토지매수 연차별 재원확보 추진(5월말 ~12월)

5.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연구용역사업 실시('02.7~'03.7)

6. 사유지에 대한 2단계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2003년)

-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
- 단계별 토지매수 기준, 대상범위, 원칙 등 세부계획 수립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현황

○ 환경부 지정

지역	지정사유	위치	면적(k㎡)	지정일자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부산시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	34.20	89. 3.10
지리산	극상원시림	전남 구례군 산동면, 토지면 (심원계곡, 피아골)	20.20	89.12.29
대암산	고층습지	강원 인제군 서화면(용늪)	1.06	89.12.29
창녕 우포늪	최대 규모의 자연늪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일원	8.54	97. 7.26
울산무제치늪	고층 습지	울산 울주군 삼동면	0.18	98.12.31
섬진강	수달서식지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진면, 토지면 일원	1.83	01.12. 1

○ 시·도 지정

지역	지정사유	위치	면적(k㎡)	지정일자
광양 백운산	희귀식물 자생지	전남 광양군 옥룡면, 진상면, 다압면	9.74	93. 4.26
대덕산 금대봉	생물종 다양	강원도 태백시 청죽동	4.20	93. 4.26
조종천 상류 명지산, 청계산	희귀곤충 및 자연림지역	경기도 가평군, 포천군	21.84	93. 9. 1
거제시	고란초 집단서식지	경남 거제시 하청면	0.002	95.10. 2
한강 밤섬	도시내의 철새도래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당인동	0.24	99. 8.10
둔촌동 자연습지	도시지역의 자연습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0.005	00. 3. 6

[붙임 3]

국립공원 지정 현황

지정 순위	공 원 명	위 치	공 원 구 역		비 고
			지정년월일	면적(km ²)	
	계			6,473.113	
1	지 리 산	전남·북, 경남	67.12.29	440.485	
2	경 주	경 북	68.12.31	138.160	(경북도위탁관리)
3	계 룡 산	충 남	68.12.31	61.148	
4	한려해상	전남, 경남	68.12.31	510.323	해상 344.763 (오동도 전남위탁관리)
5	설 악 산	강 원	70.3.24	373.000	
6	속 리 산	충북, 경북	70.3.24	283.400	
7	한 라 산	제 주	70.3.24	149.000	(제주도 위탁관리)
8	내 장 산	전남·북	71.11.17	76.032	
9	가 야 산	경남·북	72.10.13	80.163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75.2.1	219.000	
11	오 대 산	강 원	75.2.1	298.500	
12	주 왕 산	경 북	76.3.30	105.582	
13	태안해안	충 남	78.10.20	328.990	해상 290.300
14	다도해해상	전 남	81.12.23	2,344.910	해상 2,004.480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83.4.2	78.450	
16	치 악 산	강 원	84.12.31	182.090	
17	월 악 산	충북, 경북	84.12.31	284.500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87.12.14	320.500	
19	변산반도	전 북	88.6.11	157.000	해상 9.000
20	월 출 산	전 남	88.6.11	41.880	

※ 도립공원 : 22개소 747.855km² (전국토의 0.7%)

※ 군립공원 : 29개소 307.862km² (전국토의 0.3%)

자연환경 보전 관련 법령 현황

법 명	제 정	주 요 내 용
자연환경보전법	9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보전원칙, 방침, 계획 수립 ○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관리 ○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자연도 작성 ○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습지보전법	9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갯벌조사 및 습지보전계획 수립 ○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관리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 보전에관한특별법	9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우수 무인도서의 조사 ○ 특정도서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시행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6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 수렵 및 밀렵·밀거래 단속에 관한 사항 ○ 야생조수 및 멸종위기 조수의 수출·입 관리
자연공원법	8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도립·군립공원의 지정 ○ 공원계획 수립, 공원사업 및 점·사용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치·운영
토양환경보전법	9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도 조사 ○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붙임 5]

생물종 현황

○ 총 29,828종 : 동물 18,029종, 식물 8,271종, 균류·원생생물등 3,528종

대분류군		소분류군		종 수		대분류군		소분류군		종 수	
동물 18,029	척추 동물 1,440	포유류		100		고등 식물 4,662	단자엽식물		842		
		어 류		905			쌍자엽식물		2,815		
		양서·파충류		41			양치·나자식물		314		
		조 류		394			선대류		691		
	무척추 동물 13,564	해면	204	자포	224	식물 8,271	하등 식물 3,609	규조류		1,512	
		편형	123	운형	159			편모조류		316	
		구두	1	내항	1			담수녹조류		1,064	
		태형	145	완족	9			윤조류		27	
		성구	9	연체	997			해조류		690	
		환형	380	완보	49						
		절지	1,028	모악	39						
		극피	107	미색	89						
	무척추 동물 213,025	곤충		11,853		균류 (지의류포함)		3,528		1,625	
		거미		1,172		원생생물				736	
						원핵생물				1,167	
총 29,828종											

※ 자료 : 국내 생물종 문헌조사연구 (1996, 환경부)
한국 동물명집 (1997, 한국동물분류학회)

[붙임 6]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지정 현황

○ 포유류(17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붉은박쥐	6	수달	1	삵	6	물범류
2	늑대	7	바다사자	2	담비	7	하늘다람쥐
3	여우	8	반달가슴곰	3	물개		
4	표범	9	사향노루	4	큰바다사자		
5	호랑이	10	산양	5	물범		

○ 조류(59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노랑부리백로	1	아비	17	털말뚝가리	33	검은머리물떼새
2	황새	2	쇠가마우지	18	큰말뚝가리	34	흰목물떼새
3	노랑부리저어새	3	알락해오라기	19	말뚝가리	35	알락꼬리마도요
4	저어새	4	큰덤불해오라기	20	항라머리검독수리	36	검은머리갈매기
5	흑고니	5	흑기러기	21	흰죽지수리	37	적호갈매기
6	흰꼬리수리	6	큰기러기	22	독수리	38	빨쇠오리
7	참수리	7	개리	23	젓빛개구리매	39	수리부엉이
8	검독수리	8	큰고니	24	알락개구리매	40	긴점박이올빼미
9	매	9	고니	25	개구리매	41	올빼미
10	두루미	10	가창오리	26	새홀리기	42	가막딱다구리
11	넓적부리도요	11	호사비오리	27	쇠황조롱이	43	아물쇠딱다구리
12	청다리도요사촌	12	물수리	28	비둘기조롱이	44	팔색조
13	크낙새	13	벌매	29	흑두루미	45	빨종다리
		14	솔개	30	재두루미	46	삼광조
		15	참매	31	뜸부기		
		16	조롱이	32	느시		

○ 양서·파충류(5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구렁이	1	맹꽁이	3	남생이
		2	금개구리	4	까치살모사

○ 어류(12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감돌고기	1	다목장어	6	꺾저기
2	흰수마자	2	묵납자루	7	좁수수치
3	미호종개	3	모래주사		
4	꼬치동자개	4	두우쟁이		
5	통사리	5	부안종개		

○ 곤충류(19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장수하늘소	1	꼬마잠자리	8	비단벌레
2	두점박이사슴벌레	2	고려집게벌레	9	올도하늘소
3	수염풍뎅이	3	달무늬길앞잡이	10	큰자색호랑꽃무지
4	상제나비	4	물장군	11	깊은산부전나비
5	산골뚝나비	5	주홍길앞잡이	12	쌍꼬리부전나비
		6	멋조롱박딱정벌레	13	왕은점표범나비
		7	소똥구리	14	붉은점모시나비

○ 무척추동물(24종)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나팔고둥	1	별혹산호	12	유착나무돌산호
2	귀이빨대칭이	2	측맷시산호	13	잔가지나무돌산호
3	두드럭조개	3	망상맷시산호	14	진홍나팔돌산호
		4	둔한진총산호	15	해송
		5	착생깃총산호	16	장수삿갓조개
		6	깃산호	17	대추귀고둥
		7	흰수지맨드라미	18	기수갈고둥
		8	밤수지맨드라미	19	긴꼬리투구새우
		9	연수지맨두라미	20	선침거미불가사리
		10	자색수지맨두라미	21	의염통성게
		11	검붉은수지맨두라미		

○ 식물(58종)

멸종위기야생식물		보호야생식물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한란	1	솔잎난	19	풍란	37	애기등
2	나도풍란	2	물부추	20	삼백초	38	황기
3	광릉요강꽃	3	파초일엽	21	죽절초	39	갯대추
4	매화마름	4	고란초	22	개가시나무	40	망개나무
5	섬개야광나무	5	섬천남성	23	순채	41	황근
6	돌매화나무	6	솔나리	24	연잎평의다리	42	왕제비꽃
		7	자주솜대	25	세뿔투구꽃	43	가시오갈피나무
		8	큰연령초	26	산작약	44	섬시호
		9	진노랑상사화	27	깽깽이풀	45	노랑만병초
		10	노랑무늬붓꽃	28	한계령풀	46	홍월굴
		11	대청부채	29	고추냉이	47	기생꽃
		12	털개불알꽃	30	끈끈이귀개	48	박달목서
		13	으름난초	31	둥근잎평의비름	49	미선나무
		14	백운란	32	개병풍	50	섬현삼
		15	천마	33	나도승마	51	무주나무
		16	대홍란	34	히어리	52	솜다리
		17	죽백란	35	개느삼		
		18	지네발란	36	만년콩		